



중화인민공화국 법률회집

2004

민족출판사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취집

2004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편찬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 I P)数据

中华人民共和国法律汇编。2004/全国人民代表大会编；中国民族语文翻译中心译。—北京：民族出版社，2005.6

ISBN 7-105-07091-9

I. 中... II. ①全... ②中... III. 法律-汇编-中国-2004-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D920.9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5)第070736号

中华人民共和国法律汇编

2004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法制工作委员会编

(朝鲜文)

中国民族语文翻译中心译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中国民族语文翻译中心微机照排

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5年6月第1版 2005年6月北京第1次印刷

开本：850毫米×1168毫米 1/32 印张：16.375

印数：0001-500册 定价：20.00元

该书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本社发行部联系退换

(总编室电话：64212794；发行部电话：64211734)

출 판 설 명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979년부터 일련의 법률들을 제정하였다. 우리는 각급 당기관과 정부기관, 사법기관, 인민단체, 기업, 사업단위 및 광범한 간부와 군중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법률회집(1979-1984)》, 《중화인민공화국 법률회집(1985-1989)》, 《중화인민공화국 법률회집(1990-1994)》, 《중화인민공화국 법률회집(1995-1999)》, 《중화인민공화국 법률회집(2000)》, 《중화인민공화국 법률회집(2001)》, 《중화인민공화국 법률회집(2002)》, 《중화인민공화국 법률회집(2003)》을 편집출판하였다.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회집(2004)》을 편집출판한다.

이 법률회집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004년에 통과한 법률, 법률해석 및 법률문제 관련 결정들을 수록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 제 사 업 위 원 회

2005년 1월

차 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1982년).....	2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1988년).....	39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1993년).....	4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1999년).....	46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2004년).....	5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2004년 개정판).....	55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94
중화인민공화국 농업기계화촉진법.....	113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법칙법.....	125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156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168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	169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191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192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251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252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299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	300
《중화인민공화국 경매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324
중화인민공화국 경매법.....	325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339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보호법.....	340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351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352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366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367
《중화인민공화국 학위조례》 개정에 관한 전국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388
중화인민공화국 학위조례.....	389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개정에 관한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394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395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 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422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425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444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	446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예방퇴치법.....	475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 부속서 1의 제7조 및 부속서 2의 제3조에 관한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	501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중의 신용카드 관련규정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	504
향항특별행정구 2007년 행정장관 및 2008년 립법회 의 선거방법 관련문제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505
인민배심원제도를 보완함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509
현, 향 2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시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514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1982년 12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기 제5차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제 이를 공포하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
대회 제5기 제5차회의 주석단
1982년 12월 4일 북경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1982년 12월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기 제5차회의 통과)

차 례

서 언

제1장 총 강

제2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3장 국가기구

제1절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제3절 국무원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

제5절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제6절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제7절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제4장 국기, 국장, 수도

서 언

중국은 세계에서 력사가 가장 오랜 나라의 하나이다. 중국의 각 민족 인민들은 휘황찬란한 문화를 공동으로 창조하였으며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지니고있다.

봉건국가이던 중국은 1840년부터 점차 반식민지반봉건국가로 전락하였다. 중국인민은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 그리고 민주와 자유를 위하여 앞사람이 쓰러지면 다음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면서英勇하게 싸워왔다.

20세기에 접어들어 중국은 천지개벽의 위대한 력사적변혁이 일어났다.

1911년, 손중산선생이 령도한 신해혁명에 의하여 봉건적 군주제가 폐지되고 중화민국이 창건되었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중국인민의 력사적임무가 끝나지 않았다.

1949년, 모택동주석을 수령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은 중국 각 민족 인민을 령도하여 장기간에 걸친 우여곡절의 어려운 무장투쟁과 기타 형식의 투쟁을 진행하여 드디어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의 통치를 뒤엎고 신민주주의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전취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이때로부터 중국인민은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고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후 우리 나라는 신민주주의사회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로의 이행을 점차 실현하였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었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청산되었으며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었

다.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 즉 본질상의 무산계급독재가 공고발전되었다. 중국인민과 중국인민해방군은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침략과 파괴와 무력적도발을 짓부시고 나라의 독립과 안전을 수호하였으며 국방을 강화하였다. 경제건설에서 중대한 성과를 달성하여 자립적이고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공업체계가 기본틀을 갖게 되었으며 농업생산이 크게 제고되었다. 교육, 과학, 문화 등 사업이 크게 발전하였으며 사회주의사상교육에서 뚜렷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광범위한 인민들의 생활이 비교적 크게 개선되었다.

중국의 신민주주의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사업의 성과는 모두다 중국공산당이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중국 각 민족 인민을 령도하여 진리를 고수하면서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수많은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어 이룩한것이다. 국가의 금후의 기본임무는 력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진행하는것이다. 중국 각 민족 인민들은 계속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견지하고 사회주의길을 견지하고 사회주의의 제반 제도를 부단히 완성하며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적법제를 건전히 하며 자력갱생하고 간고분투하여 공업, 농업, 국방,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점차 실현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고도로 문명하고 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나라로 건설할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계급으로서의 착취계급은 이미 소멸되었으나 계급투쟁은 아직 일정한 범위안에서 장기간 존재할것이다. 중국인민은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제도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국내외의 적대세력 및 적대분자를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령토의 한 부분이다. 조국통일의 위업을 완수하는것은 대만동포를 망라한 전 중국 인민의 성스러운 의무이다.

사회주의건설사업은 로동자, 농민 및 지식인에 의거하고 단합할수 있는 모든 력량을 단합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장기간의 혁명과 건설 행정에서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각 민주당파와 각 인민단체가 참가한, 전체 사회주의근로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모든 애국자, 조국통일을 옹호하는 모든 애국자들을 망라한 광범한 애국통일전선이 결성되었다. 이 통일전선은 계속 공고발전할것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광범한 대표성을 띤 통일전선조직으로서 지난날 중요한 력사적 역할을 놀았거니와 앞으로도 나라의 정치생활과 사회생활 및 대외우호활동에서,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진행하며 나라의 통일과 단결을 수호하는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보다 더 발휘하게 될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의 각 민족 인민이 공동으로 창건한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평등, 단결, 상호 협조의 사회주의민족관계가 이미 확립되었으며 계속 강화될것이다. 민족단결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대민족주의, 주로는 대한족주의를 반대하여야 하며 지방민족주의도 반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국 각 민족의 공동의 번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이다.

중국이 혁명과 건설에서 달성한 성과는 세계 인민의 지지와 갈라놓을수 없다. 중국의 미래는 세계의 미래와 긴밀히 련결되어있다. 중국은 독립자주적인 대외정책을 견지하며 주권과 령토완정에 대한 호상존중, 호상불가침, 내정에 대한 호상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적공존의 5개원칙을 견지하면서 여러 나라들과의 외교관계와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발전

시킬 것이며 일관하게 제국주의, 패권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민족독립의 쟁취 및 수호와 민족경제의 발전을 위한 피압박민족과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정의적투쟁을 지지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인류의 진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 헌법은 중국 각 민족 인민의 투쟁성과를 법률의 형식으로 확인하고 나라의 근본제도와 근본임무를 규정한 나라의 기본법으로서 최고의 법률효력을 가진다. 전국의 각 민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 및 사업조직들은 헌법을 기본적인 활동준칙으로 삼아야 하며 헌법의 존엄을 수호하고 헌법의 실시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제1장 총 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한데 따라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를 관리하며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주의적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앞에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대표대회앞에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국가기구의 직권과 지방국가기구의 직권은 중앙의 통일적인 령도밑에 지방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에 따라 구분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로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며 각 민족간의 평등, 단결, 상호협조의 관계를 수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하여든지 차별시하거나 억압하는것을 금지하며 민족간의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의 분렬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각 소수 민족지구에서 경제와 문화를 빨리 발전시키도록 도와준다.

소수민족이 집거하는 지방은 구역자치를 실시하며 자치기관을 두고 자치권을 행사한다. 민족자치를 실시하는 지방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갈라놓을수 없는 부분이다.

각 민족은 자기의 말과 글을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가지며 자기의 풍속과 습관을 보존 또는 개혁할 자유를 가진다.

제5조 국가는 사회주의적법제의 통일과 존엄을 수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성법규는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

업 및 사업조직들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하여야 한다.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공유제 즉 전인민적소유제와 근로대중의 집체소유제이다.

사회주의공유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청산하고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에게는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제7조 국영경제는 사회주의 전인민적소유제경제이며 국민경제의 주도적력량이다. 국가는 국영경제의 공고발전을 보장한다.

제8조 농촌인민공사, 농업생산합작사 및 기타의 생산, 공급판매, 신용, 소비 등 여러가지 형태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근로대중의 집체소유제경제이다.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에 들어있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한 범위안에서 자류지, 자류산을 경영하고 가정부업을 하고 자기 가축을 기를 권리를 가진다.

도시와 진의 수공업, 공업, 건축업, 운수업, 상업, 봉사업 등 업종들에서의 여러가지 형태의 합작경제는 모두 사회주의근로대중의 집체소유제경제이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집체경제의 발전을 장려, 지도, 방조한다.

제9조 지하자원, 수역,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개펄 등 자연자원은 모두 국가소유 즉 전인민적소유이다. 법률이 정한데 따라 집체소유로 되는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개펄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국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리용을 보장하며 진귀한 동식물을 보호한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그 어떤 수단으로도 자연자원을 침점 또는 파괴하지 못한다.

제10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이다.

농촌과 도시교외지구의 토지는 법률이 정한데 따라 국가소유에 속하는것을 제외하고는 집체소유이며 택지, 자류지, 자류산도 집체소유이다.

국가는 공공리익의 필요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데 따라 토지를 징용할수 있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토지를 침점, 매매, 임대하거나 기타의 형식을 취하여 비법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은 토지를 합리하게 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법률이 정한 범위안에서 도시와 농촌 근로자들이 경영하는 자영경제는 사회주의공유제경제의 보충부분이다. 국가는 자영경제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행정적관리를 통하여 자영경제를 지도, 방조, 감독한다.

제12조 사회주의공공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공공재산을 보호한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그 어떤 수단으로도 국가재산이나 집체재산을 침점 또는 파괴하지 못한다.

제13조 국가는 공민의 합법적인 수입, 예금, 가옥 및 기타 합법적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한데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호한다.

제14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적극성과 기술수준을 높이고 선진과학기술을 보급시키며 경제관리체제와 기업경영관리제

도를 완비하며 여러가지 형태의 사회주의적책임제를 실시하며 로동조직을 개선함으로써 끊임없이 로동생산능률과 경제효익을 높이고 사회생산력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절약을 실행하고 낭비를 반대한다.

국가는 축적과 소비를 합리하게 설정하며 국가, 집체 및 개인의 리익을 고루 돌보며 생산발전에 기초하여 점차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킨다.

제15조 국가는 사회주의공유제의 토대우에서 계획경제를 실시한다. 국가는 경제계획의 종합적균형과 시장조정의 보조적역할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조화적발전을 보장한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지 못하며 국가경제계획을 파괴하지 못한다.

제16조 국영기업은 국가의 통일적령도에 복종하고 국가계획을 전면적으로 완수하는 전제밑에 법률이 정한 범위안에서 경영관리의 자주권을 가진다.

국영기업은 법률이 정한데 따라 종업원대표대회 또는 그 밖의 형식을 통하여 민주주의적관리를 실시한다.

제17조 집체경제조직은 국가계획에 의해 지도되며 해당법률을 준수하는 전제밑에 경제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자주권을 가진다.

집체경제조직은 법률이 정한데 따라 민주주의적관리를 실시하며 그 조직의 전체 근로자가 관리자를 선거 및 소환하며 경영관리상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18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의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이 정한데 따라 중국에서 투자를 하며 중국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여러가지 형태의 경제적합작을 하는것을 허용한다.